

Q

저희 현장은 대부분의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상체식 안전벨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안전대 중 벨트식은 추락시 허리에 충격을 주어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안전그네식은 가랑이 사이의 안전대가 살에 쓸려 불편한 관계로 현장에서 기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착용감이 좋고 편한 상체식 안전벨트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번에 새로 구입한 상체식 안전벨트를 보면 엑스반도의 등부위에 있던 D링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전에는 D링이 허리 부위와 엑스반도가 크로스되는 등부위에 각 하나씩 달려있는 것을 사용하였기에 제조업체와 한국산업안전공단에 문의한 결과, 성능검정기관에서 상체식 안전벨트의 등부위에 있는 D링을 부착하지 못하도록 하여 현재 새로 판매되는 모든 상체식 안전벨트는 허리부위에만 D링이 달려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상체식 안전벨트라 함은 허리벨트에 불과하며 현장에서는 안전그네식만 사용해야 한다는 말인데, 상체식 안전벨트의 등부위 D링에 대해 성능검정을 거친 후 다시 부착하여 사용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제 개인적 견해로는 상체식 안전벨트가 가장 효율적이라 생각되어, 등뒤의 D링에 안전고리를 연결하고 사용하여도 무방할 듯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현장 일선에서 안전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좀 더 근로자에게 편안하고 사용하기 쉬운 보호구를 착용케 하기 위해 문의드리오니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A

보호구의 검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근로자의 작업상 필요한 보호구로서 안전모, 안전대 등 11개 품목과 기타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보호구를 대상으로 하며 안전대는 추락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성능등을 검정하고 있고, 이는 보호구 성능검정이 관련규정에 따라 한국산업안전공단에서 안전성을 검토하여 합격여부가 결정되고 있는바, 귀하의 의견과 같이 성능검정을 받지 아니한 상체식 안전대에 임의로 고리를 설치하여 사용해서는 아니되며, 성능검정을 거쳐 합격한 제품만 사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Q

고압가스 제조허가가 있는 사업장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별표4, 10호에 의해 고압가스 관리자를 회사 전체의 산업안전관리자로 선임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A

산업안전보건법【영별표4】제10호가목과 같이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 제1항에 의한 허가를 받은 사업자 중 고압가스를 제조·저장 또는 판매하는 사업에서 동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용하는 안전관리책임자는 선임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Q

노동조합의 전임자 및 노동조합의 정식 요구에 의한 장기 상근자에 대해 아래와 같은 조건이 충족될 때,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의한 안전교육을 사업주가 상근기간동안에 시켜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 조합사무실은 별도로 있음.
- 상근자는 상근기간동안 노동조합의 업무만 하고 출퇴근도 조합으로 하며 그 곳에서 상근함.
- 전임자의 전임기간은 2년임.

A

사업주는 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동법 시행규칙 별표8 및 별표8의2 규정에 따라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는바, 귀하가 질의한 노동조합의 전임자 및 장기 상근자도 근로자이므로 이들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을 위 규정에 따라 실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소속 사업장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법의 일부적용 대상 사업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적용제외에 해당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실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

1. 연말 안전평가결과 직원, 협력회사 직원, 반장 중 안전활동 우수자 4명을 선발하여 포상에 정이며 부상으로 국내(제주도) 2박3일 여행비용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때 포상비용(현금 영수증 또는 숙박, 교통비 영수증)이 안전관리비로 가능한지요.
2. 또한 작업반장이 관리감독자로서의 안전관리직무를 충실히 하도록 하고 위험작업시 안전담당자의 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해 작업반장에게 월 일정금액의 안전담당자 수당을 지급하고, 스스로 안전관리책임감을 갖도록 하기 위해 안전담당자 유니폼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이때 작업반장에게 지급한 안전담당자 유니폼 구입 비용에 대해 안전관리비 처리가 가능한지도 함께 문의드립니다.

A

1. 안전담당자 유니폼비용은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 제1항 별표2의3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항목에 안전관계자 특정유니폼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여기서 안전관계자라 함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안전관리자, 관리감독자, 안전담당자, 명예산업안전감독관 등임)
2. 안전평가결과 우수직원 국내여행비의 사용은 동고시 별표2의5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의 안전보건 포상비로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